-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공연 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,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, 초상, 성명,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.
- ⑤ 실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6조 (사용자의 의무와 권리)

- ① 사용자는 실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.
- ② 사용자는 실연자가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, 도구, 악기 등을 제공한다.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실연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, 사용자는 실연자에 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.
- ④ 사용자는 실연자의 성명(실명/예명)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, 표기의 크기, 위치 및 방법 등은 사용자가 결정하되 사전에 실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사용자는 실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 (상품화)

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, 상업적 목적으로 CD, DVD,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,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와 사전에 별도합의하여야 한다.

제8조 (권리의 귀속)

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, 영상물,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.

제9조 (계약의 변경)

-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, 그로 인해 실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실연자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